

파주시시세조례 개정

의안 번호	3-248
----------	-------

제출년월일 : 2004. 5. 19.

제출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03.12.30)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송달방법에 보통우편송달을 신설하고,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며,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일률적인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5조).
- 나. 지방세법에서 10,000원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22조)
-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신고 및 납부의무로 구분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안 제23조, 제42조의4, 제62조 및 제63조).
- 라.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80로 조정함(안 제42조의3).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통우편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중 “4,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산출된 세액”을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2항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100분의 20을 가산한”을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으로 한다.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2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15로”를 “1,000분의 180으로”로 한다.

제42조의4중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금액을”을 “신고불성실가산세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으로, “신고납부”를 “신고한”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신고납부”를 “신고”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6조제1항중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를 “하여 시장이 조사·결정한다.”로 한다.

제99조제1항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7월 10일”을 “7월 31일”로,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② (생략) <신 설>	제1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제51조의2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보통우편을 말한다.</u>
제22조(세율) ① <u>군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개인의 세율 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의 세율 읍·면·동 : <u>4,000원</u>	제22조(세율) ①----- ----- . 1. ----- 가. ----- ----- 읍·면·동 : <u>5,000원</u>
제23조(신고납부) ① <u>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시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제 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u>	제23조(신고납부) ①----- -----산출 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 ----- ----- -----신고하고 납부----- ----- ----- ----- ----- -----신고하고 납부----- -----

아니한다.	-----.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 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산출세액 ----- ----- ----- ---- 신고하고 납부-----.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법제1조 제1항제6호의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 여 징수한다.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 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 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하지 아 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 한 세액에 법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 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 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 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 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 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 ----산출세액-----산출 세액-----법제121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 성실가산세를 합한----- -----.

제42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

②(생략)

제42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시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2조의3(세율) ①-----
-----1,000분의 180
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신고납부) -----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

제62조(신고 및 납부등) ①-----

-----신고하고 납부-----.

②-----

-----신고하고 납부-----.

③(현행과 같음)

④-----

-----신고하고 납부-----.

제63조(가산세) ①-----

-----신고불성
실가산세를-----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
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
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제
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1.~3.(생략)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99조(납기)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3.(현행과 같음) 4.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 -----신고한----- ----- ----- 5. ----- 신고----- ----- -----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하여 시장이 조사·결정한다. 제99조(납기)①----- -----신고하고 납부-----. ②----- -----7월 31일----- -----신고하고 납부-----.
--	---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4년 5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2003. 12. 30)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송달방법에 보통우편송달을 신설하고,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며,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일률적인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15조)

나. 지방세법에서 10,000원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4,000원에서 5,000원
으로 조정하고자 함. (안 제22조)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신고 및 납부의무로 구
분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 (안 제23조, 제42조의4, 제62
조 및 제63조)

라.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80로 조정함.
(안 제42조의3)

3.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2003. 12. 30)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중 보통우편 송달방법을 신설하고 개
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 하며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을 신고 및 납부의
무로 구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리
하여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5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보통우편 송달 방법을 신설하는 것임.
- 이 같은 조치는 기존에는 세액의 관계없이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방법으로 교부했던 방법에서 보통우편 방법으로도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에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2조에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76조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액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자치단체구성원인 시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비용성격을 갖고 있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으로 자주재원확보 차원에서 일부 인상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나 주민세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참고적으로 안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 주민세 인상규정은 2005년부터 적용되게 되며 주민세 1,000원 인상에 따라 약 71,000천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안 제23조, 제42조의4, 제62조 및 제65조에서는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일률적인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신고 및 납부의무로 구분하고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고 세부적으로 가산세 산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동 조치는 국세에만 적용해오던 방법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지방세에도 새로 적용하게 되는 방법으로 그동안의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42조의3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8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임.
-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세원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방세로 금년도의 세수목표액은 약 6,420백만원 규모임.